

■ 자격 확인 서류 안내

구비서류	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· 발급 구분 : 본인발급 / 용도 :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/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※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[발급용도 : '기타'선택 → "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" / 제출처 : "의왕역 SK VIEW"로 설정하여 발급]
	인감도장		·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배우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(상세)		·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"상세"로 발급 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·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[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/ Fax수신문서 제출가능] ※ 가입자 전체(직장+지역),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, 자격득실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
	소득입증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※ 소득입증 서류 참조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추가 서류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(분리세대)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	·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·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※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·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기본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· 직계비속의 출생신고일 증명이 필요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관련 진단서) 제출 ·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/ 임신확인서 불가 ※ 담당 의사명, 출산예정일,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·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"전부" 표기
	부동산소유현황 /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	본인 및 세대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·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· "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"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(전국/건축물·토지·주택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※ 자산입증 서류 참조
	자산가액 입증서류		· "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"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가액입증서류 ※ 자산입증 서류 참조
부적격 의심 세대	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	본인 또는 세대원	·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), 공동주택자격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"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"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
	당첨사실 소명서류	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	해외근무자		· 해외 단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서류
	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	본인	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용도 :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) ·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용도 :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) ·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
견본주택 비치 서식			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/ 서약서(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포함) / 신생아 자격요건 확인서 /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/ 비사업자 확인각서 / 부동산소유확인서 / 위임장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7.10.(금)) 이후 발행분**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 의심 세대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■ 소득 입증 서류

해당자격		소득 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※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: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 ※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※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,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(근로계약서(직인날인)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 (연말정산 이후인 경우)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소득금액증명 ② 재직증명서 ※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※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,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위촉증명서	①, ②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①, 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※ 국민연금 미가입자 :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) (신고서상 금액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※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	①, ②, ③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자급명세서 ② 위촉(해촉)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, ② 해당직장, 세무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※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	①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
일용직 근로자	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	① 해당직장, 세무서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) ② 사실증명서 (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자산 입증 서류

해당자격	자산 입증 제출서류		발급처
'부동산 소유현황'이 있는 경우	필수 (소유증빙)	① 부동산 소유현황 (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서류 발급)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전국단위, 주택·건물·토지 대상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위택스 (www.wetax.go.kr) ③ 행정복지센터
	필수 (자산가액 증빙)	① 공동(개별) 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)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건축물인 경우) - 서울시 : ETAX 이용안내 > 조회/발급 > 주택의 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- 서울시 외 : 위택스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※ 이택스,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"재산세 과세내역"을 발급받아 건물시가 확인가능	①, ② 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, 일사편리(kras.go.kr) ③ 서울시이택스 (etax.seoul.go.kr), 위택스(www.wetax.go.kr)
	해당자	·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: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,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: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중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	① 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(www.eum.go.kr)
'부동산 소유현황'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※ 발급방법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주택·건물·토지 대상) ※ 발급방법 : 위택스 > 발급 >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> 미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위택스 (www.wetax.go.kr)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(영유아 및 미성년자 포함)의 자산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※ 자산가액(부동산가액)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 산정해야 하며,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특례 (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)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.